

『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, 시민의 문화향상을 도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
-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과 시민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·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문화유산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.
-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업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5조).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문화기본법」 제9조제1호, 제13조제1항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, 시민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과 시민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·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문화유산 및 활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시책, 보존 활동 등 시장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업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